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9호선 3단계 918〜:920공구 건설공사 최종 보완 교통
처리계획 통보 (승파)

1. 관련근거

- 가. 경찰청 훈령 제873호(18.5.2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관리에 관한 규칙
- 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 매뉴얼 (경찰청)
- 다. 교통관리과-18399(2018.7.25.) 지하철9호선3단계 918~920공구 건설공사(최종, 원상복구) 교통처리계획 통보
- 라. 도시교통사업본부 도시철도토목부-9675(2018.8.9.) 918~920공구 건설공사 교통처리계획 보완자료 제출

2. 위 다)항 관련, 최종 교통처리계획 통보되었으나 일부 보완사항(관할 구청, 경찰서 의견 반영)에 따른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통보하니 시행 바랍니다.

가. 공사구간

승파구 백제고분로 918, 919, 920공구 개착구간

나. 변경내용 (붙임도면 참조)

- 918공구 : 차로재구획 (무단횡단 방지시설 1개소 변경 및 추가)
- 919공구 : 차로재구획 (무단횡단 방지시설 1개소 변경)
- 920공구 : 신호기(보) 신설, 횡단보도 1면 추가, 차로재구획

3. 행정사항

가.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장)은

- (1) 첨부 교통처리계획도를참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교통 안전시설을 개선설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 (2) 공사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청과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나. 서울도시교통사업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은

- (1)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전 충분한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구간 통제수 배치 등 현장 교통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준수, 기타 필요사항은 관할경찰서장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서울시(교통운영과장)와 협의.

(2) 교통 안전시설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청과 별도로 협의하고, 추후 공사기간 조정여부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공사중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공사 착공 전 충분한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구간 통제수(모범안전자)를 배치하여 교통 혼잡 방지

-아간에 공사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밝은 조도유지 및 공사구간 안내 시설물 설치

-도로점용으로 소통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와 수시 협의로 민원 소지 억제

-기타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엄수 바랍니다.

다. 송파경찰서(교통과장)은

동발 교통정보 입력하며,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의거 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시행처와 협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필요조치를 이행바랍니다.

붙임 : 교통처리계획도(최종 보완)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장) 승파구청장(교통과장), 동부도시교통사업본부(도로보수과장), 기존과장, 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 도시교통사업본부(도시철도토목부장)

장위 회재영 경정 전결 08/10 이용관

접조자 경정 오동환

시행 교통관리과-19879 (2018.08.10.) 접수 도시철도토목부-9752 (2018.8.10.)
우 03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조로8길 31. (내자동, 서울지) /http://www.smpa.go.kr
전화 02-7005125(경비/전송) 02-7230755(경비) /for:jny7@police.go.kr /대시민공개

